

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

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

- 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』 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 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.
 -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

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

- 2017. 4. 28 ~ 5. 29(32일간)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,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)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-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(읍·면·동)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「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」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이의신청서 제출시 성명, 주소,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
■ (문의처) 공동주택가격 콜센터(☎ 1644-2828)

제출된 의견은

- 해당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.
 - 인터넷 제출의견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에서 확인
 - 서면 제출의견 : 개별회신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)
- ※ 이의신청결과는 2017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.